

평창군 청년가입승계 지원 조례안

(심현정 의원)

의안 번호	474
----------	-----

발의연월일: 2025년 9월 19일

발의자: 심현정 의원

찬성자: 남진삼, 김광성, 이은미 의원

1. 제안이유

가입을 승계하려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돋고, 가업승계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적용범위 및 책무(안 제3조 ~ 제4조)
- 다. 지원대상 및 가업승계 지원(안 제5조 ~ 제6조)
- 라. 사후관리 및 홍보(안 제9조 ~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시행령」, 「평창군 청년 기본 조례」
- 나. 예산조치 : 불임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다. 집행기관의견수렴 : 2025. 8. 26. ~ 2025. 9. 3.(9일간), 의견없음

[조례안]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서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가업승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업승계 활성화를 통한 전통업소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평창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가업”이란 평창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생업을 말한다.
3. “청년가업승계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가업을 승계한 청년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년가업승계 지원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가업승계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② 청년가업승계인은 물려받은 가업의 경영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지역발전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및 제외업종)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다만, 지원제외 대상 업종은 별표에 따른다.

제6조(기업승계 지원) 군수는 청년의 안정적인 가업승계와 조기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업승계에 관한 법률·세무 상담
2. 제품의 진열, 포장, 결제시스템 등의 컨설팅 지원
3. 상거래 현대화를 위한 경영환경 개선
4. 판로개척 및 확대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중복지원 제외)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

제8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환수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청년가업승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 결정된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때
3.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할 때
4.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실질적으로 가업을 승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때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방법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다.

제9조(사후관리) 군수는 청년가업승계인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청년가업승계인의 지속적인 경영안

정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 등) 군수는 청년가업승계인 발굴과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전통유지의 소중함과 필요성에 대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청년기업승계 지원제외 대상 업종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1	•56211	•일반유통 주점업
2	•56212	•무도유통 주점업
3	•68	•부동산업
4	•91121	•골프장 운영업
5	•91291	•무도장 운영업
6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7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8	•46102 중	•담배 중개업
9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10	•46333	•담배 도매업
11	•64	•금융업
12	•65	•보험 및 연금업
13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14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15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단계판매업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차·투기조장등의 업종
16 도박 및 게임 관련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전자상거래업 소매 중개업(47911) 및 전자 상거래 소매업(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그외 기타 분류인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그 외 기타 정보서비스업(63999) 중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9-1)
17 건전 문화 관련	• 그외 기타 분류인된 상품 전문 소매업(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텁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중	• 흥신소
	• 오락장 운영업(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18 투기 조장	• 경영컨설팅업(71531) 중	• 기획부동산업(주)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려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 차. (생 략)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4. ~ 7. (생 략)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소상공인의 책무) ① 소상공인은 자주적인 노력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영업활동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소상공인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조하고 상호 간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영 제4조 및 제7조 중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같은 영 제7조 제2항제1호 중 “직전 3개 사업연도”는 “직전 사업연도”로, “36개월”은 “12개월”로,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은 “매출액”으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호”는 “제1호”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으로 한다.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

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보아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 가.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인원
 -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개월 수로 나눈 인원
 - 다.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평창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
2. ~ 5. (생략)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안 제6조(가입승계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관광경제국 경제과장 전해순
연락처	(033) 330 -2540